

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정이유

- 통합방위법 (1997. 1. 13 법률제5264호)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(1997. 5. 31)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,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 하도록 되어있는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□ 주요골자

1. 통합방위 대비책,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,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등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함 (안 제2조)
2.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5명의 간사를 두도록 함 (안 제3조, 제6조)
3.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(안 제7조)
4. 파주시 및 읍·면·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8조)

☐ 제정조례(안) : 별첨

☐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☐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○ 통합방위법 제 5, 9, 17조

○ 통합방위법시행령 제 7, 14, 28조

○ 대통령훈령 제28호 제 7, 8, 10, 11조 (Ⅲ급비밀)

☐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☐ 예산수반사항 :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될 경우 예산필요

☐ 사전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☐ 기타 참고사항

○ 표준안 공문

[경기 민방 36100 - 1015 ('97. 9. 2), 33820 - 1159 ('97. 10. 2)]

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,제9조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와 파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읍·면·동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방위 대비책
2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
4. 취약지역 대비책
5. 통제구역 설정
6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
제3조(협의회의 구성)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②의장은 시장이 되며, 1인의 부의장을 두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.

1. 시의회 의장
2. 관할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3.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기무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
4. 국가안전기획부 관계관
5. 파주경찰서장
6. 파주교육장

7. 의정부병무지청장

8.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제4조(협의회의 위원의 임기) ①제3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의 운영)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제6조(협의회의 간사)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1. 작전담당간사 : 관할 군부대의 작전참모(과장 또는 장교) 및 경찰서 경비과장

2. 예비군담당간사 :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

3. 총무담당간사 : 총무과장

4. 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

②협의회의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작전담당간사

가. 작전분야 주무간사로서 실무위원회 운영

나.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

다.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, 개선방안 강구

라.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

마.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 준비

바. 기타 작전에 관한 사항

2. 예비군담당간사

- 가. 통합방위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
- 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
- 다. 기타 예비군에 관한 사항

3. 총무담당간사

- 가.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·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수행
- 나.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주관
- 다. 협의회 개최 및 운영
- 라.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,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·보고
- 마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대비책 수립, 시행, 조정에 관한 업무수행

4. 민방위담당간사

- 가.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·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·조정
- 나. 기타 군관련 업무의 협조·조정·통제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- 1.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
- 2.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- 3. 관계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·조정

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제8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, 시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, 읍·면·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·면장 및 사무장이 된다.

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, 시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, 읍·면·동 상황실장은 부읍·면장, 사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·통제한다.

③분야별 시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하고, 읍·면·동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동원지원반, 재정지원반, 통신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 내지 7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

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관계자로 하되, 읍·면은 계장급 공무원, 동은 담당공무원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.

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제9조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)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목의 사항

- 가.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
- 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·유지
- 다.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
- 라.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
- 마.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
- 바.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·봉사활동의 실시

2. 적의 저공 또는 저속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

- 가. 10년생 이상의 입목
- 나. 모래병커 또는 연못
- 다. 이동식 장애물(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)
- 라. 기타 장애물로 환용이 가능한 체육·문화시설 등의 구조물

3. 적의 저공 또는 저속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

가.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

나.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

제10조(운영규정)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